

농림수산업 건축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따른 한농연 대응활동

| 정책조정실 박상희과장 |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제정, 시행('06.7.12)시 농업관련시설도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농림수산업 건축물로 인하여 교통유발, 인구집중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을 요하지 않자 농림수산업 건축물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을 재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미 납부하거나 납부 대상인 농민들에 대해 소급적용은 받을 수 없어 현장 농민들의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 배경과 문제점, 한농연의 대응활동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기반시설부담금이란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로 지난 6월부터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정부가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의 평균금액은 도시지역이 1제곱미터당 25,400원이며,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1제곱미터당 7,110원이다.
- 따라서 지난 12일부터 건축연면적이 200m²를 초과하여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단,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용

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추가되는 건축연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금액 등에 의해서 산출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등학교),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용됨으로서, 그 만큼 도시의 기능이 회복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 한편 새롭게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기본취지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제도다.

2.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왜 문제인가 ?

- 우선 농림부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가 200m²(약 60평) 이상 신·증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도록 하는 이 제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의견을 구했음에도 농림부는 제대로 알지 못해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
- 더욱이 농림부 실무자들은 관련법이 제정돼 공포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 돼 공청회는 물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데도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축사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 한편, 내년 2월부터 축사 등 농축산용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 될 예정이지만 기납부하거나 납부 대상인 농가들에 대한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에 의해 법 시행 5개월 만에 법이 재개정되었지만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하니 현장 농민

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3. 한농연의 요구사항 및 대응활동은?

○ 성명서 대응활동 전개

- 7월 12일 이후 고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지불하고 신규로 농업용 시설을 건축해야 했던 일선 농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금을 지불한 농민들과 납부대상인 농가들에 대한 소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농림부 항의 공문 발송

- 만약, 농림부 담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 된 축사 등 농축산용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환급되지 못한다면 담당 실국장 및 실무자들의 징계를 강력히 요청했다.

○ 법적 대응방안 마련

- 농림부의 답변 공문을 검토한 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을 위한 행정소송(손해배상청구)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농업전문변호사를 통해 원론적인 자문을 받았으나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행정부가 내린 결론(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불가)을 사법부가 판단하다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즉,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환급 받을 가능성은 미비하다는 뜻으로 향후 행정 소송 여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참고사항(농림어업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예외로 함)

- 건설교통부는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촌의 축사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 입법예고하였다.

- 지난 7월 12일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전국에 걸쳐 시행되면서, 각종 농어촌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과 농업진흥구역 내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 농촌의 축사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었고, 이는 법의 도입취지와(농업용시설은 교통유발, 인구집중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을 요하지 않음) 맞지 않다는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퇴비사?미생물배양시설, 집하장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7.12일 이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행위에 대해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도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에 건축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입법예고가 끝난 후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 따라서 축사 및 농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내년 2월 이후에 신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